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며 양 당사국 간 양자 무역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제6.2조 적용범위 및 정의

-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규격, 또는
 -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3.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장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 4.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6.3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4조 표준

1.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표준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이 다른 쪽 당사국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표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에서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한다. 그러한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통신연합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6.5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납득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가.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의 접근방식과 그 밖의 적절한 접근방식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하여 양 당사국 간에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 채택 및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처리기간과 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6.7조 투명성

1.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기술능력 개선 및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 나.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것
 - 다.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을 이용하는 것
 - 라. 관련 국제표준, 권고 및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및 인정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 마.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 및 국제 기구 업무에서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 바. 세계무역기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와 그 밖의 관련 국제 또는 지역 포럼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 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IECEE-CB scheme'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IECEE-CB' 시험 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

제6.9조 소비자 제품 안전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제 체계, 사고 분석, 유해 경보, 제품 금지, 제품 리콜 그리고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모범규제관행, 제품안전감시를 포함한 위험 관리 원칙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규제집행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6.10조 이행 약정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 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추가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11조 표시 및 라벨링

1.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따라,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이 제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가. 그 당사국은 그 제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나.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 그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급한다.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의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1)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 2)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제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마. 그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6.12조 국경 조치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6.13조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및 장려
 -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 라. 제6.8조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의 제고
 - 마.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 아. 세계무역기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하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 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차. 이 장을 이행하는 데 양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카.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이 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 중국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규제 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 조율하고 그러한 기관 및 인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 우편,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제6.14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1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